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율방범대의 날 제정·운영 및 수당 등의 지급 근거 마련〉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76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제안경위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

III. 검토의견	3
-----------------	---

가. 자율방범대의 날 제정 및 운영 근거	3
------------------------------	---

나. 자율방범대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	6
--------------------------------	---

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9
-----------------------------------	---

※ 참고자료

자율방범대법 및 의용소방대법 수당·보상금 관련 법령	12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희용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07. 18.
3. 회 부 일 : 2024. 07.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사회에서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을 지향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1953년 ‘주민 야경제도’로 시작한 자율방범대는 이후 국가 경찰력을 보조하는 ‘안전파수꾼’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안전한 지역사회 구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병·부상·사망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역사회가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 및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 또는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가. 자율방범대의 날 제정 및 운영 근거

개정안 제3조의 2는 자율방범대의 날과 해당 기념행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3조의2(자율방범대의 날 제정 및 운영) ①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u> <u>②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u>

범죄 예방 등 치안 지원 활동을 담당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해 체계적 관리·지원·지도 등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입법 요구를 반영하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2023.4)함에 따라 지역 내 치안 환경의 안전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런데, 지역 치안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는 법정 기념일 등이 없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의 봉사·희생정신과 업적을 기념하고,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을 격려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의 날(11월 2일)과 해당 기념일 행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의용소방대 및 해양재난구조의 경우 기념일과 기념행사 시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¹⁾

다만, 현행 자율방범대법은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²⁾ 자율방범대가 자원봉사활동 단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기념일과 행사는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 ①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해양재난구조대의 날 제정과 운영) ① 해양재난구조대의 봉사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12월 23일을 해양재난구조대의 날로 정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의 날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바,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경찰청은 자율방범대의 소속감·영예성 고취를 위한 전국 기념행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1990년부터 11월 2일을 경찰청의 ‘112의 날’로 기념해온 점을 감안하여 해당 기념일 날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나. 자율방법대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

개정안은 자율방법대원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권자가 요청하는 자율방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② (생략) <신설>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법대원이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율방법활동을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동안 자율방법대는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³⁾,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지역별 「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초소운영비, 야식비, 피복비, 순찰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아 왔음⁴⁾.

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및 향후 과제(이슈와 논점 제2073호 2023.03.21./ 국회 입법조사처)

그런데, 자율방범대의 참여 활성화와 각종 다양한 신종 범죄 출현에 따른 대응책 중 하나로 통상적인 지역순찰 업무 외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시·도경찰청장등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이하 기관장이 요청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⁵⁾ 수당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이에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의 예처럼 자율방범대원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을 수행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민생치안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하 “시·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소집수당 등) ①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의용소방대원에 지급되는 수당은 화재진압·재난 구호 등 생명과 직결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관의 재난·재해 현장 대응을 보조하는 데에 따라 지급되는 위험수당의 성격을 가지는 데 반해,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은 주로 범죄예방과 청소년 보호 등 예방순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긴급성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수당 지급의 요건이 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화재와 같이 단기간에 인력이 필요한 상황과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자율방범활동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출동 수당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상당한 규모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⁷⁾

따라서, 자율방범대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으면 경찰청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예산편성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입법적 근거를 둘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7) 경찰청의 예산소요 추정에 따르면 향후 5년간 1,760억원, 연평균 352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자율방범대원 수(A, 명)	97,274	97,274	97,274	97,274	97,274
1인당 수당(B, 원)	25,852	25,852	25,852	25,852	25,852
단체별 순찰 활동(C, 회)	14	14	14	14	14
추가재정소요(=A×B×C, 억원)	352	352	352	352	352

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의 수행 등으로 인해 질병·부상·사망 상황에 처한 경우 보상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② (생략) <u><신설></u>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u>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의 수행 또는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u>

현행법⁸⁾은 지역 내 치안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하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원의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 비용의 지

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원 규정만 두고 있어, 자율방범활동 중 입는 피해 등에 대한 완전하고 실효적인 보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효과적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활동의 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입는 피해(질병·부상·사망)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의용소방대 및 해양재난구조의 경우 재해보상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해당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음.⁹⁾

다만, 현행법(제14조)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율방범대가 법정 자율방범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소요 비용의 전부·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경비 등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개정안을 반영하여 체계에 맞게 조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입법 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재해보상 등) ①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재해보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그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경찰청은 자율방범대는 범죄 취약지역 내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만큼, 여타 단체에 비해 부상 등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자율방범대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재해보상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44

※ 참고자료 - 자율방범대법 및 의용소방대법 수당·보상금 관련 법령

구분	자율방범대법	의용소방대법
법률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재해보상 등) ①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시행령 · 시행 규칙	「자율방범대법 시행령」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21조(재해보상)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애보상 3. 장례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 등) 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 피복비, 장비 구입비, 야식비 2.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대원의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훈련 경비 5. 합동 순찰·계도 활동, 공익사업 등 연합회가 추진하는 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5조(재해보상)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애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 정도가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 ②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④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	--	---